

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

(임규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4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6일
발 의 자: 임규호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김영철, 박승진, 박영한, 신복자, 아이수루, 유정인, 윤종복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, 한·신, 홍국표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,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'납품대금 연동제'의 필요성이 제기됨
- 22.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·배포하고,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실시한데 이어, 국회에서는 위수탁거래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을 의미화하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23.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
- 다만 정부는 1차 위·수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및 계약 기간 등에 예외를 두고 있는 바, 재위탁 및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사각을 해소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기본계획 수립 및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심의.자문,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. 안 제8조, 안 제9조)
- 마. 연동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탁, 표창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서울특별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위·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2. “대기업”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.
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

나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다. “납품대금 연동제”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
4. 그 밖의 용어는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

준용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·중소기업 및 공공기관(이하 “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
2.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3.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·포럼 개최
2.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
3.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

4.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 등 효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,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·자문)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, 자치구, 기업 등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)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

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창) 시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·기업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